2019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1월 17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지원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1호 - 「201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75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서 2019년도 기채한도 의결을 받아 당행 앞으로 2019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를 설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2019년중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금액의 최고한도와 상환기한, 이율 및 기타조건을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2018년중 재정증권 발행금리가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이었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가 2018년에 재정증권을 두 차례 발행하였는데, 평균 발행금리가 당시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일시차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 일시차입이 2013년중 최고 23조 9,000억여원에 달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정부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부진하여 일시부족자금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및 상환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 당행 유동성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또는 상환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을 계리하는 보전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다만 정부의 당행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경상지출에, 그리고 당행의 법인세 및 이익잉여금 납입분은 경상수입에 각각 해당되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고 부연하였음. 아울러 한국은행의 대정부대출,법인세 및 이익잉여금 납입 등은 지급준비금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당행은이러한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9년도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201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별첨)

<별첨>

2019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

-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 구분	회 계 별	대출금 한도 (억원)	상환기한	기 타
일 시 대 출 금	통합계정	300,000	2020.1.20일	대출취급기한 : 2019.12.31일 (단, 양곡관리특별회 계의 경우 2018년 대출금중 미상환액 을 한도에 포함하 여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20.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19.12.31일	
	합 계	400,000		

-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 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 4. 시행일자 : 2019년 1월 17일(목)